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 신청 시 체류하는 자로만 규정하여 단기간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부적정하게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최근”의 모호한 기준을 “조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급자 중 60일 이상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장기간 체류자의 급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에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사일 기준으로 외국에 180일간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체류하였던 사람(최초 신청 시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별가구) ① (생 략)	제2조(개별가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②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u>	2. <u>조사일 기준으로 외국에 180</u>
<u>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u>	<u>일간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u>
<u>있는 사람</u>	<u>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거나</u>
	<u>체류하였던 사람(최초 신청</u>
	<u>시에는 제외한다)</u>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연 락 처	(044) 202 - 3057